## 11.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O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O 발 의 자 : 황순자 의원, 강민구 의원, 김성태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재우 의원, 김지만 의원, 박갑상 의원, 박우근 의원, 송영헌 의원, 이영애 의원, 이태손 의원, 정천락 의원
- O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황순자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O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# □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O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O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O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O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해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김창업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3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.
-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5조는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고, 수급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기준을 규정함.
- O 안 제6조는「장애인복지법」및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고, 안 제7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현재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한해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있고,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.(참고자료)
- 안 제3조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,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이 선정기준·규모·지원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제2항에서 보행기 지원 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사업 집행 시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,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.
- 안 제5조제1항 지원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, 의료 급여수급자 등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,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으며,

- O 안 제6조에서는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 시행에 앞서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음.
- 또한, 본 조례에 따라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기 시행 중인 '사회복지공동모금회'를 통한 보행기 지원사업은 중단될 우려가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,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예산지원 방침 등을 명확히 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수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음.

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,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 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			

## 5. 토론요지

○「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」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함.

# 6. 수정안 요지

○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를 "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"에서 "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"로 수정하였음.

# 7. 심사결과

○ 수정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

# 10. 첨부서류

○ 위원회 수정안 : [붙임1]

### [붙임1] 위원회 수정안

#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대구광역시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"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를 "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로 수정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이 조례는 공포 후 <u>6개월</u> 이 경과	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<u>1년</u>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#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해 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노인" 이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.
  - 2. "성인용 보행기"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「복지용구 급여범위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.
- **제3조(지원대상자)**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- 2.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
  - 3.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 한 노인
  -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규모,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.
- **제4조(예산지원)**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5조(지원기준)**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,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.
- **제6조(지원제외)**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

**제7조(지원금의 회수)**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